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

제안연월일 : 2007. 11. .

발 의 자 : 한창동 의원

찬 성 자 : 이언구 의원 외 6인

1.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 2007년 11월 5일 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심사과정 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민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와 설치준비 등의 사유를 절충하여 시행하고자 이를 번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조례안 부칙사항 중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3. 그간의 추진경위

- '07. 10. 8 : 조례안 제출(충청북도지사)
- '07. 10. 18 :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문화위원회 심사(심사결과 보류)
- '07. 11. 5 : 조례안 수정의결(김법기 의원 외 7), 본회의 심사보고 철회
- '07. 11. 16 : 간담회 개최(의원 8, 정비조합 및 매매조합대표 2, 도관계자 3)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부칙사항중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번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번 안
부칙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에 등록(「자동차 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조(정밀검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2.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
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4.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5. 법 제6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7. 법 제85조 제6호에 대한 청문
8. 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9.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검사 독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도지사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 제64조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지정사업자가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7. 제60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66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무를 정지처분하면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85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6조에 따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94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2. 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 및 창원시

※ 시행일 : 2008. 1. 1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2 (운행차 정밀검사) ①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6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92조의3 (재검사) ①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4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재검사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5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 나.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③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5 (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대상지역·대상자동차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6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9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92조의8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27의3과 같다.

제92조의9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7의4와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27의3]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제92조의8관련)

1. 정밀검사대상자동차

적용일자		2003년	2004년 1월1일 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005년12월31일까지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1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비 고

1. 정밀검사대상자동차는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한다.

2.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며, 기타자동차는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견인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량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정밀검사의 유효기간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2년
	기타 자동차	1년
사 업 용	승용 자동차	1년
	기타 자동차	1년

비 고

1. 정밀검사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 본다)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 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의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말한다.
2.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말한다)하는 자동차 중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 등록일부터 30일(변경 등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정밀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기산한다.

- 가.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 나.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다.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별표 27의4]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2조의9관련)

1. 일반기준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되 배출가스 검사는 제3호 가목의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는 제3호 나목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삭제 <2006.12.29>
- (2) 상시 4륜구동 자동차
- (3)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 (4)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
- (5) 기타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나. 관능 및 기능검사 결과 자동차의 상태가 배출가스 검사과정 또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검사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차대동력계상에서 검사도중 자동차의 결함발생으로 배출가스검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중지하고 이를 적합하게 정비한 후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행하여야 한다.

라. 이 표에서 정한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능 및 기능검사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가.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등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와 일치할 것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나) 등록번호판 확인
나. 배출가스검사전 자동차의 상태 확인	(1)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확인
	(2) 부속장치는 작동을 금지할 것	에어컨, 히터, 서리제거, 라디오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
	(3)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정화용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기타 관능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확인
	(4)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봉인이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조속기,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봉인훼손여부를 확인
	(5)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6)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할 것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의 임의변경여부를 확인
	(7)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냉각수, 연료 등이 누설되지 아니할 것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과 냉각수 및 연료의 누설여부 확인
	(8) 엔진, 변속기 등의 기계적인 결함이 없을 것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배기장치 등이 안전상 위험과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확인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다. 배출가스관련부품 및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1)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증기저장캐니스터의 연결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나) 크랭크케이스 저장연결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다) 연료호스 등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라) 연료계통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마) 연료탱크의 캡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2) 배출가스 전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정화용촉매의 정상부착여부 확인 (나) 정화용촉매, 보호판, 방열판 등의 훼손여부 확인 (다) 정화용촉매의 산화작용부분에 필요한 공기 공급장치가 있는지 확인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가) 재순환 밸브의 부착여부 확인 (나) 재순환 밸브의 수정 또는 파손여부를 확인 (다) 진공밸브 등 부속장치의 유·무, 우회로 설치여부 및 변경여부를 확인 (라) 진공호스 및 라인 설치여부, 호스 폐쇄여부 확인
	(4) 엔진의 가속상태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가)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의 여부와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나) 최대로 가속하였을 때 엔진의 회전속도가 최대출력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5) 전기점화조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배전기, 기화기, 점화지연밸브, 열진공스위치 등에 연결된 진공호스와 전기배선이 제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6) 흡기량센서, 산소센서, 흡기온도센서, 수온센서, 드로틀포지션센서 등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가)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 장치를 연결하여 센서기능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 (나) 엔진공회전속도가 정상적인 회전 속도(500~1,000rpm 이내)인지를 확인
	(7) 기타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기타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확인

3. 배출가스 검사

가. 부하검사방법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배출가스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부하검사방법에 의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측정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1)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대동력계에서 25%의 도로부하로 4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40km/h의 속도에 적합한 변속기어(자동변속기는 드라이브 위치)를 선택한다)에서 검사모드 시작 25초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2)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단위로,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고 기록한다. 3) 차대동력계에서의 배출가스시험 중량은 차량중량에 136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2) 매연, 엔진정격회전수 및 엔진최대출력검사	<p>(가) 부하검사방법 1모드에서 엔진정격회전수, 엔진정격최대출력의 측정결과가 엔진정격회전수의 $\pm 5.0\%$ 이내이고, 엔진정격최대출력의 50%(엔진정격최대출력의 50%로 산출한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s 단위로 산출한 값을 엔진정격최대출력의 검사기준 값으로 한다) 이상일 것</p> <p>(나) 부하검사방법에 따라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매연농도가 운행차 중간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p>	<p>1)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한으로 밟은 상태에서 자동차 속도가 가능한 70km/h에 근접하되 100km/h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속기어를 선정(자동변속기는 오버드라이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하여 부하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모드를 시작한다.</p> <p>2) 검사모드는 가속페달을 최대한으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형성하여 각 검사모드에서 모드 시작 5초 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되면 엔진회전수, 최대출력 및 매연측정을 시작하여 10초동안 측정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p> <p>3) 엔진회전수 및 최대출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각 10rpm, 1ps단위로, 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단위로 산출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p>

나. 무부하검사방법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p>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측정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과잉률(λ)을 측정하여 그 범위가 1 ± 0.10 이내일 것.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그 범위가 1 ± 0.15 이내, 촉매미 부착 자동차는 1 ± 0.20 이내일 것</p>	<p>1)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정지가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cm 이상 삽입한다.</p> <p>2)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0.01 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p>
(2) 매 연	<p>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매연농도가 운행차 중간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에 의한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p>	<p>1) 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 도달 후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상태로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다.</p> <p>2) 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배기관의 벽면으로부터 5m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5cm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p> <p>3)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밟으면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 소요시간은 4초 이내로 한다.</p> <p>4) 위 3)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p>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p>이때 3회 측정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거나 최종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측정하여 최대 10회까지 측정하면서 매회 측정시마다 마지막 3회의 측정치를 산출하여 마지막 3회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이내이고 측정치의 산술평균값도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측정을 종료하고 이를 최종측정치로 한다.</p> <p>5) 만약, 위 4)의 단서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10회까지 반복 측정하여도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거나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마지막 3회(8회, 9회, 10회)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p>

비고 : 삼원촉매장치[산화 및 환원작용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환원촉매장치를 붙이지 아니하고 전운전영역에서 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위 표의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